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2005.4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담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우원식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05.3.25
3. 회 부 일 : 2005.3.29

II. 제안이유

금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휘발유 대비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를 환경 오염, 연비, 차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00:85:50으로 조정함으로써 휘발유 및 LPG 차량이 경

유승용차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완화하여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수송용연료인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가 2006년 7월 기준으로 100:75:60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2007년 7월 기준으로 100:85:50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경유의 특별소비세액을 리터당 460원에서 584원으로 인상하고, 부탄의 특별소비세액을 킬로그램당 704원에서 414원으로 인하 조정함(안 제1조제2항제4호나목 및 바목).

IV. 검토의견

□ 이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유의 특별소비세액을 2007.7 기준으로 리터당 460원에서 584원으로 인상하고, LPG 부탄의 특별소비세액을 킬로그램당 704원에서 414원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 460원/ℓ ※ 경유세율 단계별 인상 계획 (2000.12.29개정법 부칙 제4항) · 2004.7.1~2005.6.30: 363원/ℓ · 2005.7.1~2006.6.30: 412원/ℓ · 2006.7.1 이후: 460원/ℓ □ LPG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 704원/kg* (특별소비세법 §1②4 나목 및 바목)	□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 584원/ℓ ※ 경유세율 단계별 인상 계획(안 부칙 제3항) · 2005.7.1~2006.6.30: 458원/ℓ · 2006.7.1~2007.6.30 : 521원/ℓ □ 2007.7.1 이후 : 584원/ℓ □ LPG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 414원/kg (특별소비세법 §1②4 나목 및 바목) ※ 이 개정안은 2005.7.1부터 시행

*단계별 인상계획에 의거한 5.4 LPG부탄에 대한 세액은 420원/kg임.(동법부칙 제4항)

□ 이는 금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경유승용차의 급증으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 제1차 에너지세계개편에 의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

비율 100:75:60(2006년 7월 기준)을 제2차 에너지세계개편¹⁾에 따라 100:85:50(2007년 7월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에너지세계개편에 따른 유류간 상대가격비율

구분	OECD 평균	제1차에너지세계개편		제2차에너지세계개편(안)	
		세계개편전 (2001.6 기준)	2006.7 이후	세계개편전 (2004. 하반기)	2007.7 이후
휘발유	100	100	100	100	100
경유	86	47	75	70	85
LPG(부탄)	45	26	60	53	50

□ 2000년 제1차 에너지세계개편은 에너지 과소비, 환경오염, 에너지수급구조의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가였던 경유와 LPG 가격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6년 7월까지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율을 100:75:60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음.

<참고자료 : 제1차 에너지세계 개편내역 참조>

1차 에너지세계개편 이후 전반적으로 유류 소비증가율이 둔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²⁾,유종별 수요측면에서 볼 때 LPG에 대한 수요감소가 다른 연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유(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나³⁾,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⁴⁾

더욱이 2005년 1월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대기환경오염의 악화가

1)정부는 경유승용차 허용에 대응하여 에너지 상대가격의 국제수준(OECD국가의 평균상대가격비는 100:86:45) 조정을 원칙으로 조사용역·공청회 등을 거쳐 2004.12월 경제장관감담회에서 유류 상대가격비율을 휘발유:경유:LPG=100:85:50으로 재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계개편안을 확정하 바 있음.

2)석유 소비증가율은 1차 에너지세계개편 전후로 '90~'99년 평균 8.1%였으나, '01~'03년 평균 0.95%로 감소하였음.

3)유종별 차량점유율 중 경유자동차 등록대수 점유율이 00년 29.9%에서 '03년 34.8%로 증가하였음.

4)한국조세연구원의 수송용 에너지 단위당 환경오염비용 추정결과에 의할 때, 경유의 단위당 환경오염비용은 867원으로 휘발유(407원)와 LPG부탄(208원)에 비하여 매우 높음.

예견되므로, 휘발유 및 LPG 차량의 경유 승용차로의 급격한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수송용 에너지의 유종별 상대가격 재조정 의 필요성이 인정됨.

□ 개정안은 유종별 적정 상대가격비를 2007년 7월까지 100:85:50으로 재조정하 되, 가격인상폭이 큰 경유세액을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조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안 부칙 제3항), 이 는 급격한 경유가격인상을 지양함으로써 물가 및 물류비용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과 같이 유류 상대가격비율이 조정될 경우 국내 승용차의 유종별 보급 률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적 측면에서 연간 약 37,400톤(△4.0%)의 대기오염 배출량 감소가 예상되는 등 환경개선효과 가 기대됨.

<참고자료2 :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이후

유종별 자동차 등록비율 전망 참조>

□ 다만 개정안에 의할 때, 2007년 7월 기준 으로 경유의 특별소비세액을 리터당 460 원에서 584원으로 인상하고⁵⁾ 부탄의 특 별 소비세액을 킬로그램당 704원에서 414원으로 인하하고자 하나, 경유 및 LPG부탄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각각 2006년말과 2005년 말에 폐지됨에 따른 기간별 세율변동요인이 반영되어있지 않 아, 이에 의할 때 2007년 7월 상대가격비 가 100 : 91 : 51이 되어 경유가격이 너무 높게 인상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적절한 세액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또한 세제개편으로 인해 경유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이를 연료로 하는 버스·화 물차 등 운송업계의 부담증가가 불가피 할 것인 바, 운송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⁶⁾을 통한 지원이외에 운수업계 전반의 경 영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반 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개정안에 따른 세액조정시 유류간 상대가격비율 전망

(단위 :원/ℓ, %)

구분		최근 6개월 평균	'05년 7월	'06년 7월	'07년 7월
휘발유	소비자가격	1,365	1,370	1,370	1,370
	상대가격비	100	100	100	100
경 유	소비자가격	960	1,045	1,129	1,242
	상대가격비	70	76	82	91
LPG부탄	소비자가격	730	725	692	692
	상대가격비	53	53	51	51

* 최근 6개월 평균가격 기준으로 가정

5)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휘발유와 함께 1994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교통세로 전환되어 부과되고 있으므로, '05.7~'06.12까지 경유에 대하여 교통세법이 적용됨.

6)유가보조금은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경유와 LPG부탄의 가격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이를 연료로 하는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 운수업계에 대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분을 보조하여 원가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으로, 현재 2001년·2002년 인상분의 50%와 2003년이후 인상분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당초 2005년 6월말까지 유가보조금지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감안하여 2008년 6월 말까지로 지급기한을 3년 연장하였음.

<참고자료>

1.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 내역

(단위 :원/ℓ)

	휘발유	경유	LPG부탄 (원/kg)	등유	중유	LPG프로판 (원/kg)	LNG (원/kg)
2007.7 (세제개편전)	630	155	23(40)	60	-	40	40
2001.7	630 588	185	67(114)	82	3	-	-
2002.1	630 588	191	67(114)	82	3	-	-
2002.7	630 586	234 232	132(226 203)	107	6	-	-
2003.7	630 572	276 261	189(323 297)	131	9	-	-
2004.3	630 559	276 255	189(323 297)	131	9	-	-
2004.7	630 545	319 287	245(420 382)	154	11	-	-
2005.7	-	362	301(515)	178	15	-	-
2006.1		362	346(592)	205	17	-	-
2006.7		404	411(704)	231	20	-	-

* 음영은 탄력세율(실제 부과세율)

* LPG부탄의 ()는 kg당 세율로서 기본세율임.

2.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후 유종별 자동차 등록배율 전망

구분	현행	개편후	미개편시
휘발유차량	48.5%	42.3%	32.2%
경유차량	37.7%	41.6%	62.5%
LPG차량	13.8%	16.1%	5.3%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